

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. 9. 22 선고 2020가단126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0. 9. 8.

판결 선고 2020. 9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양양군 C 전 1,662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슬레이트지붕 주택 168㎡ 및 같은 도면 표시 11, 12, 13, 14, 15,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슬레이트지붕 축사 111㎡를 각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08. 10. 2. 주문 제1항 기재 토지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슬레이트지붕 주택 168m² 및 같은 도면 표시 11, 12, 13, 14, 15,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나) 부분 슬레이트지붕 축사 111m²(이하 '이 사건 각 건물'이라 한다)를 소유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자백간주 또는 강제1호증의 기재,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,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.

판사박민지

별지